



제433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 신설 〉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17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7일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이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대피 및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희생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한 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 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입국 후 일정 기간 내에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고,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12의2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외국인 안전보건교육) ①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신 설>

주기, 방법 및 그 밖에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4(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u>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u> <u>4. 임직원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u> <u>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u> <u>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u> <u>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u> <u>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령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입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별도의 취업교육기관에서¹⁾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

1)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축산업), 대한건설협회(건설업) 등

면서 사용자에게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²⁾

개정안은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에서 숨진 23명의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가 18명에 이르렀던 점에 주목하여,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를 별도로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좀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취업교육에도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업종별 작업안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5시간 이수하고 있고,³⁾

「산업안전보건법」은⁴⁾ 외국인근로자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를

2)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외국인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과정 시간 기준]

과 목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시간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생활법률	5시간
고충상담절차 등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기관 안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모성보호 교육	3시간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5시간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시간

4)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정기적으로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⁵⁾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흩어져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이 입국 직후 사업장 이동 전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이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취업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산업안전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 의무교육도 시행 중이며, 제11조의3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 등을 포함한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참 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개관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45

【참 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개관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 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